

## 디자인 특허 출원

**Q** 비밀디자인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A**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시 [기타사항]란 다음 줄에 [비밀디자인 청구란을 만들어 [청구이유] 및 [청구기간]을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설정등록 전까지 비밀디자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청구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3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되 그 연수와 월을 “등록일로부터 \*월” 형태로 기재하면 됩니다.

**Q** 유사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A**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 가지 변형디자인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타인의 모방·도용이 용이하나,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미리 유사범위내의 유사디자인을 등록 받아 침해·모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사디자인제도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물품의 형상, 색채, 모양 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 공개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7조). 출원인은 출원시에 단독, 유사여부 구분을 명시해야 하며, 그 후에도 자진해서 또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후 단독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유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사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 이전/소멸됩니다. 단, 유사디자인권만을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으로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유사디자인은 독자성도 가지고 있어서, 그 등록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독자적으로 등록취소나 등록무효가 될 수 있고, 독자적인 원인에 의하여 소멸할 수도 있으며, 독자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도 가능합니다.

**Q** 디자인심사등록 출원시에 여러 건의 유사디자인을 출원하려면 하나의 출원서만을 작성하면 되나요?

**A** 디자인심사등록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디자인마다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사디자인등록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등록, 참조)번호란에는 기본디자인의 출원의 출원번호, 등록번호, 참조번호 중 하나를 기재해야 하고, 기본디자인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추가로 디자인일련번호란에 해당 디자인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Q** 디자인 도면 작성시에 도면 대신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요?

**A** 디자인 등록출원인은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9조 3항). 사진으로 제출할 때 입체디자인의 경우에는 사시도와 4면도에 준하는 사진이 필요하며 평면디자인의 경우에는 표면도와 이면도에 준하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의 규격은 최대 10cm×15cm, 최소 7cm×10cm 크기로 하고 사진에는 디자인이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해야 하며, 배경·음영 등이 나타나서는 안됩니다. 사진은 도면규격에 의한 보조용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해야 하며, 사진의 설명을 해당 도면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도면대용 ○○면 사진”과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기재요령).

**Q**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등록되면, 일반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요?

**A** 무심사등록출원도 설정등록이 되고 나면 일반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취소결정 또는 무효심판에 의한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요건 심사만을 거쳐 등록되므로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는 실제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부실권리는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심판이나 소송절차 이전에 이의신청에 의한 행정절차에 의해 취소시킬 수 있어 무심사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적 보완장치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 2).



김석현 변호사

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한 바 있고, 이 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대표 변호사를 지냈으며 법무법인 총정에서 특허부를 총괄했다. 현재 청구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문의 : (02)521-7671

e-mail : kimsh@chwpat.com